
『신평택복합화력, 하남미사 및 오산세교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

2013. 11. 25

한국가스공사

※ 본 답변은 풍림산업(주)['13.11.13] 및 쌍용건설(주), 대림산업(주), 금호산업(주), (주)태영건설, 대보건설(주)['13.11.19] 질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적정성심사 관련 : 관로건설공무팀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	Q. 입찰시 제출하는 입찰금액 사유서 부수 및 형식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부수는?	A. 입찰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는 반드시 책으로 제본하여 17부(CD 1개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본 불량으로 일부 내용이 분실될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공사가 배부한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 4-마항에 따라 절감사유서 작성 시 해당 페이지 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한부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Q.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유가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및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에 해당하나 해당 공종에 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공종 사유서 표지에 “사유없음” 을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및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찰시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의 추가자료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습니다.	
3	Q. 건축공사에서 ‘주요자재’항목으로 별도로 분리된 세부공종 외에 비고란에 주요자재로 명기한 세부공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건축공사에서 주요자재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으며(ex. 4.주요자재), 비고란에 ‘주요자재’라고 명기된 세부공종의 경우 ‘소요자재 가격에 대한 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역작성 시 「현장설명서」 II-2-다(건축공사)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4	Q. 총괄표의 경비항목 중 산식에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가 들어가는 항목에 3/1000 적용 시 3/1000을 반영한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작성가능한지?	A. 간접노무비 산정 시 1000분의 3을 적용하였다면 다른 경비항목(ex.기타경비 등) 산정 시 입찰참여업체에서 총괄표에 적용한 간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5	Q.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1000분의 3 적용가능여부?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정 시 「30공종 분할내역서-총괄표」의 산식을 적용하며, 기타 법정경비와 동일하게 「세부시행요령」 3-라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고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 시에도 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합니다.	
6	Q. 재료비(또는 경비)와 노무비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공종 하위일위대가의 재료비를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사유서 작성이 가능한지?	A. 적정성심사 시 하위일위대가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재료비(또는 경비)와 노무비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공종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재료비를 절감할 경우 입찰금액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7	Q.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 3-라항에 법정경비 산정시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모든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도 해당이 되는지?	A. 부가가치세는 「30공종 분할내역서-총괄표」의 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시행요령」 3-라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고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 시에도 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합니다.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8	Q.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4에서, 동일 세부공 종 판정 여부?	A. <u>품명, 규격, 단위, 비목별(재/노/경) 단가가 모두 동일할 경우(띄어쓰기 및 대/소문자 구분 제외)</u> 동일한 세부공종 으로 판단하므로, 특수문자 등의 표기가 상이하면 동일한 세부공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품명, 규격, 단위 및 합계 단가가 동일하더라도 비목별(재/노/경) 단가가 상이하다면 동일 세부공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9	Q.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바-1)-마) 의 평가 기준은?	A.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바-1)-마)항의 경우, 비목별(재/노/경)단가 및 금액을 당공사의 조사금액의 비 목별 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한 경우, “ 재료비, 노 무비, 경비의 각 비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로 판단하여 해당 세부공종을 40 점으로 평가합니다.	

2. 설계내역서 관련 : 관로건설토건1팀 및 관로건설기계팀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	Q. 순성타운반(토취장) 거리가 L=22.4km인데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A. 토취장 위치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에서 토취장을 검색하여 선정하였으며[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주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47)], 운반경로는 “관리소현장→수목원로→발안로→오산천로→동부대로→동탄기흥로→동부대로→용구대로→토취장”입니다.	토목
2	Q. 토목공사에서 터파기 및 운반장비의 대형화에 의한 절감 가능 여부?	A. 터파기에 적용된 장비는 당공사가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으로 설계한 것으로 이를 수정할 시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Q. 현지 운반로 조사를 통한 운반속도 변경 가능여부?	A. 당공사의 운반속도에 대한 설계사항은 현장여건, 도로상황, 관련법규(제한속도, 교량 통과하중 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이를 수정할 시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Q. ‘Semi-shield 기계경비’ 사유서 작성 시 기 수행한 공사경험을 근거로 굴진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A. 현장시공 경험치를 이용하여 절감사유서를 작성할 경우 증빙자료 및 가격자료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Q. 「30공종 분할내역서-건축공사」에서 179번행 ‘세라민페인트칠’의 재료비단가 산출오류가 있는지?	A. 11월12일 게시된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1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6	Q. 「30공종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1038~1055 및 1997~2018번행 세부공종의 단위 및 수량이 바뀌어 입력되어 있는데?	A. 「30공종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1038~1055 및 1997~2018번행 세부공종의 단위와 수량의 값을 서로 바꾸도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7	Q. 기계공사 일부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가 소수점으로 산정됐으며, 금액산정 시(수량*단가) 합계금액과 1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A. <u>적정성심사 시 당공사가 배부한 30공종 분할내역서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u> , 30공종 분할내역서의 비목별 단가가 소수점으로 적용된 경우에만 비목별 단가를 소수점까지 작성 가능하며 비목별 금액 및 합계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해야 합니다.	
8	Q. 「30공종 분할내역서-기계공사」 494번행 “배관 TIE-IN공사”에 금액 산출오류가 있는데?	A. “배관 TIE-IN공사” 세부공종의 수량 및 단가는 적정하나 금액 산출시 계산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중치 산정 및 적정성심사 시 30공종 분할내역서에 기입된 금액(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	Q. 「30공종 분할내역서 및 물량내역서」에서 기계공사 129번행 “가설비”의 합계단가가 없는데?	A. 「30공종 분할내역서」에 합계단가를 1,487,913으로 수정하시고, 30공종 물량내역서에 합계단가를 기입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Q. 「30공종 분할내역서 및 물량내역서」에서 기계공사 2256번행 “Mg-ANODE”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데?	A. 「30공종 물량내역서」에서 해당공종의 수량을 분할내역서와 동일하게 ‘10’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1	Q. 「30공종 분할내역서 및 물량내역서」에 합계 단가가 누락된 세부공종이 있는데?	A. 「30공종 분할내역서-기계공사」에서 129, 203, 873~953, 1083, 1153, 1724~1821, 1974, 2566~2663번행 세부공종의 합계단가에 비목별(재/노/경) 단가의 합을 적용하시고, 「30공종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상기 세부공종의 합계단가에 금액을 기입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2	Q. 「30공종 분할내역서 및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2240번행의 관경이 30"로 되어 있는데?	A. 「30공종 분할내역서 및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2240번행의 관경을 26"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13	Q. 「30공종 분할내역서 및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2256번행 세부공종의 수량 서로 다른데?	A. 「30공종 물량내역서-기계공사」 2256번행 세부공종의 수량을 분할내역서와 동일하게 '10'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4	Q. 기계공사 '강관부설' 품은 표준품셈 품을 참고하여 비례식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 품을 수정하여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A. '강관부설' 세부공종은 표준품셈값을 비례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를 수정할 시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5	Q. 「30공종 분할내역서 및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696번행 '잡철물 설치제작 (PIPE & VALVE SUPP ORT)' 세부공종이 20번 공종에 포함되는지?	A. 질의하신 세부공종은 20번 공종에 포함됩니다.	
16	Q. 「30공종 분할내역서-기계공사」에서 261, 1212번행 '야적장 전기 수전비용(정산분)'의 단가가 누락되었는데?	A. 「30공종 분할내역서-기계공사」에서 261, 1212번행 '야적장 전기 수전비용(정산분)' 경비 및 합계 단가를 4,090,000으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30공종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동 세부공종에 경비 및 합계 단가를 기입하셔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7	Q. 「30공종 분할내역서 및 물량내역서-기계공사」에서 572번행 수량이 누락됐는데?	A. 11월12일 게시된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1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18	Q. 「30공종 분할내역서-기계공사」에서 1210번행 '감독용 차량(정산분)' 재료비 단가가 셋째짜리에서 절사되어 있는데, 수정해서 반영해야 하는지?	A. 당공사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 3-다 항에 의거, PS항목(정산분)의 금액은 수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당공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다르게 반영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에도 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합니다.	